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5. 8. 5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5. 8. 7
- 라. 상정일자 : 1995. 8.10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제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제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조례 제4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조례 제37조의 2)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조례 제39조의 2)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조례 제39조의 3)
-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제조정함
 -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관사에 한함 → 1, 2급 관사에 한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번 내 용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현재 부천시의 공유재산중 다른 시·군에 있는 재산이 없지만, 다른 시·군의 재산을 매입할 경우에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내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전국이 공통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
의 결 년 월 일	95. 8. 12 (제40회)

제출년월일 : 1995. 8. 5

제 출 자 : 부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조례 제4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조례 제37조의 2)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조례 제39조의 2)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조례 제39조의 3)
-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관사에 한함→1, 2급관사에 한함)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중 “다만, 공유법에 대해서는 공유입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법에 대해서는 공유입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단서규정중 “단, 1급관사에 한함”을 “단, 1급·2급관사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삭제)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있는 일반시는 5억원이상, 기타 시·군은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있는 일반시는 1만제곱미터이상, 기타 시·군은 5천제곱미터이상)	

현행	개정안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 1건이라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 산의 취득·처분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삭 제)

현행	개정안
2. ~ 3. (생략) (신설)	2.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생략)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5.(단, 1급·2급관사에 한함)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수도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7.(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8. 단, 1급·2급관사에 한함

94.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안번호	18
의결 년 월 일	95. 8. 12 (제40회)

제의년월일 : 1995. 8. 12

제 의 자 : 부천시의회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2. 내 용

○ 94.결산검사위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시 의 원	김 일 섭	54. 11. 19	제무경제위원회 위원
공인회계사	김 선 구	63. 5. 4	김선구 공인회계사
시 장 추 천	박 준 익	36. 12. 15	원미1동장 역임